

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신설 2023. 7. 20.>

하자재발 사실 통보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농업기계 소유자	성명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	
	연락처	전자우편 주소
통보대상 농업기계	기종명(형식명)	규격
	제조번호	인도받은 날짜 년 월 일
	주행거리 km	통보연월일

동일한 하자 수리 내역	하자구분		[] 중대한 하자		[] 일반 하자	
	1회	수리업자명	수리요청일		수리완료일	
		하자내용(증상)	수리내용			
	2회	수리업자명	수리요청일		수리완료일	
		하자내용(증상)	수리내용			
	3회	수리업자명	수리요청일		수리완료일	
		하자내용(증상)	수리내용			
	수리 횟수가 4회 이상입니까? []예(____회) []아니오					
	누적 수리기간: 총____일					

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농업기계 제조업자·수입업자 귀하

유의사항

- 교환·환불 요건에 해당하는 수리는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제조업자등(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 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합니다)에게 받은 수리만 해당합니다.
- 수리 횟수 산정 시 농업기계 소유자가 해당 결함 또는 하자에 관한 증상으로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한 경우는 수리 횟수에 포함됩니다.

작성방법

- 중대한 하자는 1회,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같은 하자가 재발한 당시 주행거리를 적습니다.
- 중대한 하자, 일반 하자 구분은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1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,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하자로 구분됩니다.
 - 중대한 하자: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,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, 차동장치, 차축, 차륜, 타이어 등 주행장치, 유압장치, 조향장치, 제동장치, 완충장치, 주행과 관련된 배터리, 주행과 관련된 전기·전자장치, 차대(차대가 없는 농업기계는 차체를 말합니다)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
 - 일반 하자: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